

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4] <개정 2025. 10. 1.>

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(제15조의7제1항 관련)

1.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

$$\frac{\text{연도별 재활용목표량} \times \text{인구수} \times \text{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} \times \text{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}}{\text{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}}$$

2.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

$$\frac{\text{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} \times \text{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} \times \text{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}}{\text{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 총매입량}}$$

비고

1. "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"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,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.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.
2. 별표 3 제3호의 제품군은 위 표 제1호의 "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매입량"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.
3. 제2호의 "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반영계수"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,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.